

2006년 11월 15일

인권 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수정안

맥긴티 정부는 2006년 4월 상정한 인권 헌장수정 법 2006 법안 107의 보강 안을 제안하는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타리오의 40년 된 인권 제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여 차별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불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된 입법하에서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의 임무는 인종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장벽 등 온타리오의 조직적 차별을 공론화 하기 위한 공중교육, 홍보, 공중 변호, 연구 및 관찰 등을 통한 예방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불평을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새로운 불평 처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인권 재판소의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또는 자문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입법 안의 주요 제안된 변경 사항은 광범위한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수사와 공익을 위한 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소의 절차에 보다 큰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변경사항:

- 인권 법률 지원 센터를 입법화 합니다.
- 정보, 자문, 도움 그리고 법적 대변 등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 인권 법률 지원 센터를 위한 공공기금을 확고히 합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면 주의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인권 재판소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 필요했던 사람, 또는 필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

- 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를 통하여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케 합니다.
- 임명된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할 것을 확실히 하는데 이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 위원회가 공익을 위하고 자기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것을 명시합니다.

위원회의 수사권과 공익을 위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정사항:

- 여하한 사안, 문서라도 조사하고, 사람들을 심문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 위원회가 인권 재판소에 상정된 여하한 건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합니다.
- 계류중인 불평이 당시 제도 아래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방안을 조정합니다.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의 공정성을 증진 하기 위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

- 인권 재판소의 관행과 절차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공정 공평하고 신속한 결과를 유도함을 의무화 합니다.
- 인권 재판소에 상정된 불평이 시한과 사법권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각자에게 구두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최종 파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인권 재판소가 청문을 하지 않고 불평을 기각하는 권한을 제한합니다.
- 인권 재판소가 비용을 설정 부과하는 기능을 제거합니다.
- 불평을 제출하는 제한 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 연장합니다.
- 인권 재판관들이 인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안된 입법 안 107 의 변경 사항을 요약한 도표는 요구하시면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안된 인권 현장 수정 법, 2006 는 2006 년 6 월 6 일에 제 2 독회를 거쳤으며 현재 사법 상임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연락처:

브렌단 크릴리
법무부 공보부
(416) 326-2210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일반전화 문의: 416-326-2220 혹은 1-800-518-7901

시각 장애인들은 위의 전화 번호에 연락하면 본문서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TTY: 416-326-4012

본 문서는 14 개 국 언어로 번역됩니다.

번역문은 곧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볼 수 있습니다.